

정책제안

# 모든 국민의 배움 권리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

## 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Korean Federation for Lifelong Education

한국평생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사)한국평생교육사업회  
Korean Association for Lifelong Educator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IFELONG LEARNING CITIES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of Municipal and Provincial Institutes for Lifelong Learning



- 모든 국민의 배움 권리 보장을 위한 -

# 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

■ 저출산, 양극화 등 국가 위기와 AI, 글로벌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새로운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평생교육 단체들의 정책연대

- **(참여단체)**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평생교육학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전문대학평생직업  
교육협회, 한국 평생교육 HRD학회, 한국문해교육협회, 한국대학평생교육원  
협의회,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전국야학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단체〉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평생교육 관계자·기관·단체 간 연대 및 협력을 위한 단체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평생교육사 권익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단체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 분야 연구 활동 및 학술교류 단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202개 시군구, 74개 교육지원청 협의체(평생교육법15조)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협의체(평생교육법20조)

- **(조직체계)** 상임공동대표, 고문, 공동대표, 집행위원회

상임공동대표	박영도(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이재주(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 양병찬(한국평생교육학회장), 김미경(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진희종(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
고문	김신일(前교육부장관), 박인주(前청와대 사회통합수석), 안양옥(前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최운실(미래글로벌공동체재단 이사장), 김영철(前서울평생교육진흥원장), 한재갑(교육플러스 대표이사)
집행위원장	황환택(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정책특별위원장)
공동대표	연대 참여단체
집행위원	이진이·한희자(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장나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조순옥(한국평생교육학회), 어재영(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김종선·김명랑·정재현(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 [ 모든 국민의 배움 권리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 ]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대전환의 시대,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100세 인생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사회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평생학습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계층, 성, 나이, 직업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을 제외하고 일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교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인간 삶 본연의 모습인 동시에 삶의 질, 국가 경쟁력, 사회통합 등을 선도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평생학습을 통해 모든 국민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의 배움 권리 보장을 위한 8대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2025. 5.

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

<모든 국민의 배움 권리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 8대 정책과제>

**1.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누구나 언제나 배울 권리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책무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평생학습기본법」제정
- 21세기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를 위한 평생학습 관련 법률들의 통합과 재구성

**2. 중앙 부처 평생교육 체계의 혁신과 실질화가 절실합니다.**

- 국무총리 소속「평생교육처」를 신설, 전 부처 평생교육(직업교육 포함)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여 통합적으로 추진
- 대통령 소속 국민 평생교육 거버넌스 기구 설치(또는 교육위원회 정비) 및 관계 부처 간 평생교육 정책협의회 기능 강화

**3.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 사무' 조항을 신설하여 모든 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법 개정(학교교육 연결), 자치교육(지역마다 자치와 행정, 교육의 연결 고리 플랫폼) 실현 위한 제도개선
- 지방정부 단위의 지역사회와 평생교육, 초·중·고, 대학이 어우러진 협력 모델로의 자치교육 교육공동체 운영

**4. 「평생학습 기금」을 신설하여 온 국민이 원하는 학습을 원하는 시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기본 학습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 100세 시대를 맞아 '20년 학교 교육 투자'와 함께 '80년 생애 교육 투자'가 국가 사회의 책무
-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평생학습기금'으로 전환하여 향후 교육 예산의 10%를 평생교육 예산으로 의무 편성

## 5. 모든 국민의 생애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휴가제** 전면 도입이 필요합니다.

- 전 국민 생애 전환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급학습휴가제' 전면 도입 추진
- 범부처 연계 온국민 평생학습이력체계 구축

## 6.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국민의 기초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 저학력 성인·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의 국가 책임제 구현(노인, 다문화, 학교밖 청소년 등)
-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검정고시 과목 면제 중장년의 기초학력 취득 제도 보완

## 7. 긴 생애사회에서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인생대학**을 운영합니다.

- 기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생대학 운영
- 다양한 지자체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은퇴 학습자의 경력과 경험을 지역사회 교육자원으로 활용

## 8.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생활권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 공적 평생교육전달체계(평생학습관)를 보다 가깝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읍·면·동마다 생활권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
- 양질의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사 의무 채용

-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중인 시민참여교육-직업교육-교양교육-학력인정 교육-성인진로교육 등을 총괄하기 위한 「평생학습 기본법」 체계 구축
-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 필요함. 관련 법률들(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평생교육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등)의 관련 조항의 통합 조정을 통하여, 평생교육 관련 정책들 간의 체계성과 연결성 제고

## 필요성

- 시민권으로서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 필요함
  -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누구나 언제나 배울 권리’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책무
  - 100세 시대에 대응하여 ‘20년 학교 교육 투자’에 이은 ‘80년 평생교육 투자’에 대한 국가 책임 요구
- 고용을 기반으로 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평생학습 참여를 시민권으로서 보장 필요 → 원천적으로 사각지대 해소 가능
- 온 국민의 역량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생 학습 필요
  - 각 부처가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화되어 있어 사업의 중복과 공백이 생겨 국민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

## 사업 개요

- 학교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의 연계를 위한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 평생학습 관련 정책 간 체계성과 연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진흥과 협력을 위한 기본법률(가칭)’(이하 ‘평생학습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평생학습기본법'은 시대 변화에 맞게 평생학습의 이념과 원리를 밝히고 그에 상응해서 평생학습 관련 제도와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추진 전략)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간의 개념 혼란을 피하고 미래 지향적인 평생학습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평생학습기본법」제정함
- (주요 내용)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관할하는 법들이 연계되어 평생학습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2002.8.26., 제정)을 시대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기존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진흥 관련한 여러 제도들(평생학습계좌제, 학습휴가 등)과 진흥 체계(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 등을 승계될 수 있도록 함
  - 현 「평생교육법」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성인 교육의 영역을 다루며, 주로 평생학습관 등을 통한 지역 평생학습 전달 체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교육법」(가칭)으로 전면 개정함

## ■ 기대 효과

-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헌법에 규정된 국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평생교육 진흥의 대전환 추진
  - 기존의 법적 경계로 인하여 실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전면적인 구도와 체계, 예산 등의 중복과 결락을 극복할 수 있음
  - 취미·교양에서부터 직업능력향상·일자리까지 정부 정책의 연계성 향상으로 국민의 정책 체감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AI, 디지털 등 새로운 환경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학습을 요구하고 있어 여러 정부 부처에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 중심의 교육부 체계로는 컨트롤 타워 역할에 한계 보임
- 국무총리 소속으로 「평생교육처」를 신설, 평생교육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게 하여 여러 부처 및 지자체의 평생교육 정책을 총괄·조정·지원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가 교육체계 마련

## 필요성

- 저출산, 양극화 등 국가 위기와 AI, 글로벌화 등 새로운 시대에서 국민 역량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평생학습 필요
  - 각 부처가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적·분절적으로 운영 됨에 따라 사업의 중복과 공백이 발생하고, 일자리 등 다른 사업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

※ <정부 각 부처 평생교육 관련 정책>

교육부(지역평생교육, 문해교육, RISE, 장애인평생교육 등), 고용부(생애단계별직업 능력개발, 일-학습병행정책 등), 과기부(디지털배움터, AI교육 등), 문체부(생애주기별 맞춤형문화·예술교육 등), 산업부(산업현장재교육 등), 중기부(중소기업재직자지원 교육, 소상공인역량강화 등), 농식품부(여성농업인교육, 후계농·전문농 성장지원교육 등), 복지부(노인, 장애인, 건강 등 분야별 교육 등), 여가부(경력단절여성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교육지원 등), 환경부(기후변화·탄소중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등

- 교육부-교육청 사무에서 지자체 종합적 사무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반영한 중앙 부처 조직이 필요함
  - 교육부가 평생교육 사무를 담당하였으나,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과 다르게 정부 전 부처들과 연관되며,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이 요구되는 국가 의제이기에 이를 총괄·조정하는 조직 필요성 대두

- 각 부처 평생교육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수립 함으로써 배움 기회 제공 및 일자리 등 부처 개별정책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설치 필요
- 국가교육위원회 또한 학교 교육에 치우쳐 있어, 전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거버너스 조직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됨

## ■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급변하는 국민 수요에 탄력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생 교육 컨트롤타워 구축 및 국민 평생교육 지원체계 확립
- **(추진 전략)** 정부·지자체 평생교육 기능을 총괄 조정·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온 국민의 보편적 평생학습시대 개막
- **(주요 내용)**
  - ① 국무총리 산하 「평생교육처」 설치
  - ② 국가교육위원회 정비(또는 국가평생교육위원회 설치)
- (기능·역할) 각 부처 및 지자체 평생교육 정책 조사·분석 및 조정하여 교육-일자리-삶이 연계되는 정책순환지원체계 마련
-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 국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평생교육 지원 정책 대전환 추진
- (관련 법령) 「정부조직법」,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 ■ 기대 효과

- 공공의 평생교육 정책의 체계화 및 시너지 제고
  - 각 부처·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평생교육 정책을 총괄·조정하여 중복·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교육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 취미·교양에서부터 직업능력향상·일자리까지 정부 정책의 연계성 향상으로 국민의 정책 체감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3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 사무’ 조항 신설

- 2007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 이후, 평생교육의 중심축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적 책임과 사무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정비가 요구됨.
-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무 명시가 없어, 「평생교육법」상 의무와 실질적 행정 운영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 이로 인해 지역 간 평생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학습도시 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을 명시함으로써, 책임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모두가 생애주기별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필요성

- 현행법(헌법 및 평생교육법)상의 책임 불이행에 따른 실효성 있는 행정 체계 필요
  - 헌법 제31조와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책임 지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무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8호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무를 추가해 명확히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함
  -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며, 국민의 학습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지자체별 재정여건 및 단체장 관심에 따라 지역 인프라 격차 줄임
  - 전국 202개의 평생학습도시 대다수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예산 및 인력 확보에 한계를 지님

※ [참고] 2020년 발의 당시 행정안전부는 평생교육 진흥을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보기 어려우며,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은 자치단체 사무의 예시 규정 이기에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대안 반영 폐기 처리  
(출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688호) 행안위 검토보고서)

## ■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지자체 평생학습 체계 완성을 위한 법적 역할 명확화
  - 평생학습을 지방분권형 행정체계에 정착시켜 시민들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
  - 지역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 추진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추진 전략)

### 1) 법적 사무 명문화 추진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8호에 ‘평생교육 진흥 사무’ 조항 신설

#### 8. 지방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과 평가
- 나.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관리
- 다. 평생교육 운영 및 시민 참여 지원

### 2) 책임 주체 명확화

- 지자체장이 평생교육의 직접적인 행정 책임을 지도록 역할 부여

### 3) 시민참여 확대 및 운영 지원

-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민학습모임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 4) 제도 시행 이전부터 단계적 준비

- 시·군·구 평생학습관 확대, 운영 모범 사례 공유, 법 시행령 개정 등 병행

### • (평생교육 사무 조항 신설)

- 「지방자치법」상 ‘평생교육 사무’ 조항 신설 및 명문화
-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 시민 학습권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책임 부여
-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
-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대상 합동평가에 평생교육 지표 신설

※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에 따르면, ① 일반행정, ② 사회복지, ③ 보건·위생, ④ 지역경제, ⑤ 지역개발, ⑥ 문화가족, ⑦ 환경·산림, ⑧ 안전관리, ⑨ 중점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예) ⑥ 문화·가족 : 4개 시책, 9개 지표, 23개 세부지표로 구성

6-1. 지역문화기반 확충 → 6-1-1 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평생교육 영역 삽입〉

- ⑤ 지역개발 영역의 5-1 지역인프라 강화(5-1-1 지역인재육성 및 주거 정비, 5-1-2 도로명 주소 활성화 및 지적 재조사) 부문에 삽입하거나,
  - ⑥ 문화·가족 영역에 평생교육 지표 삽입(6-5)
- (평생학습관 시설 확충 위한 국가 보조금 법률 시행령 개정)

### 〈현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 〈개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삭제)
-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시·군·자치구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확충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 ■ 기대 효과

- 지역 간 평생교육 격차 해소

- 법적 기반을 통해 지자체별 편차 없이 안정적인 평생학습 기회 제공

-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지원으로 미래사회 대비

- 평생교육을 지방자치 운영의 핵심 사무로 정립하여 적극적 고령사회, 미래 사회 대비

- 국민 학습권 보장 실현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생애주기별 학습권의 실질적 구현

-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강제력 확보

- ‘할 수 있다’ 수준의 추상적 권한을 ‘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변경하여 실효성 제고

## 4 전 국민 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기금> 확보

- 평생학습 기금을 통하여 온 국민이 원하는 학습을 원하는 시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기본학습비 지원

### 필요성

- 교육부 예산의 1% 수준인 평생교육 예산 확대와 부처별 분절적 예산 투자의 비효율성 극복을 통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역량개발 기회 제공
  - 교육부 예산 구조에서 평생학습 비중 확대 필요, 최근 10년간 교육부 전체 예산 중 평생교육에 직접 투자 비중은 1% 미만
  - 국가 교육 투자의 비대칭 구조(하연섭, 2015) : 최근 10년간 교육부 전체 예산 중 평생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은 1% 미만



- 교육부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 리더십 발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타개 필요
- 학령기 인구 중심의 교육투자로는 21세기 전환기의 교육개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중앙-지자체 협력·연계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이용권 전달체계 구축
  - 현재의 평생교육이용권(Voucher)을 단계적으로 보편적인 평생학습 참여 비용 지원 제도로 확대 발전 추진
  - 특히 국민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보편적 금전적 학습지원 확대
  -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점차 전국민으로 확대

## ■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전 국민 기본학습비 보장을 통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보편적 학습권 실현
- (추진 전략) 평생교육이용권을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국가 및 기초 자치단체의 매칭펀드를民間 기여금까지 포함하는 기금으로 확대
  - (1단계: 지원 규모 확대) 현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학습참여 의지가 있는 신청자 100% 지원
  - (2단계: 지원 대상 확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 (3단계: 국민 기본학습비 지원) 전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 청년-중년 -노년 생애 전환기에는 생애 전환 대비 학습 추가 지원
- (온국민 평생학습계좌 개설) 학습비는 온라인 학습계좌를 통하여 지급 하며, 학습 이력을 함께 누적·관리함으로써 생애 설계 지원
  - (대학 학위 취득 연계) 누적된 학습 이력은 대학 학점으로 전환, 대학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학점은행제와 제도 연계 운영
- (학습비의 활용처) 학위 취득, AI·디지털 리터러시, 인문교양 목적 학습을 포함하여 국민이 원하는 학습이라면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학습휴가제와 연계) 학습 참여 촉진을 위하여 학습휴가제와 연계, 학습 휴가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소득 보장
- (평생학습 기금 운영·관리) 가칭 평생학습기금법을 제정하거나 평생교육 법에 진흥 기금 규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함. 평생학습기금 관리 위원회 및 기금관리 전담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 법제화를 통한 지역 평생교육 진흥 기금의 조성

〈개선 : 평생교육 진흥 기금의 조성〉

현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제16조의 1 (평생교육 진흥 기금의 조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등 평생교육시설의 확충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 등을 위해 평생교육 진흥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 ■ 기대 효과

- 온 국민의 보편적 학습 참여로 자영업자·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국민 역량 격차가 완화되고 제2의 인생 설계 촉진

## [평생교육이용권 단계별 지원 목표 로드맵]



【단계별 재원-추진체제-시스템 추진 로드맵】

구분	1단계 ('21년~'22년)	2단계 ('23년~'25년)	3단계 ('26년~'30년)
재원확보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지방비	국고보조금+지방비+기금
추진체제	국가-시·도광역 추진체제 구축	국가-시·도광역-시·군·구 추진체제 구축	국가-시·도광역-시·군·구 추진체제 구축
시스템	국가-광역-기초지자체 연계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안정화 시스템 구축	재원누수 관리 시스템 구축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현안대응 및 발전방안 모색 NILE ISSUE PAPER

\*1단계 :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국고 141억) + 지자체 매칭 펀드, 정책 대상 확대

\*2단계 : 2023년 국고보조금 + 지방비, 정책 대상 확대, 지원 체계 완비

\*정책 전환 목표 : 2026년 평생교육기금 구축 + 국고보조금 + 지자체 매칭 펀드, 전 국민 대상

- 현재 지자체 운영 평생교육기관 무상 평생교육 →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전환하여 매칭 예산 확보
  - 매년 단계별로 투자 액수와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교육 범용 바우처 제공
  - 전 국민의 역량 개발을 통한 학습 결과를 통합적으로 인증하는 〈평생학습계좌제〉와 이를 학력으로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연계
- ▶ (싱가포르 ‘평생학습기금법(Lifelong Learning Endowment Fund Act)’ 기금으로 25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대학을 비롯해 정부가 인가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무 역량 강화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경우 500싱가포르달러를 지원하는 ‘SkillFuture Credit’ 제도를 운영)
- ▶ (미국(워싱턴주)의 평생학습계좌제법(LLAA, 2007)) 근로자 대상으로 특성화, 주정부와 고용주가 출자하여 기금 조성/활용
- ▶ (영국의 개인학습계좌제(ILA)) 전 국민 대상(19세 이상), 학습기술법(2000년)에 의해 시행

- 향후 평생학습기금 도입을 통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평생학습기금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생애 단계에서 필요할 때 기본학습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
  - 온 국민이 원하는 학습을 원하는 시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기본학습비 지원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기금제도 구축

## 5 전 국민 [평생학습휴가제] 도입

- ☑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스스로에게 필요한 평생학습의 내용, 형태, 기간 등을 결정하고 일터에서 벗어나 학습에 참여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유급 학습휴가제도’를 ‘실질적 권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함

### 필요성

- 모든 근로자를 위한 유급 학습휴가 제도의 실질 사용 권한 보장
  - 「평생교육법」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에 보장된 근로자의 학습휴가 지원 조항을 실질적 권리 조항으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 독려 필요
-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 지원을 토대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업 생산성 증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추진 필요
  -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자율적 직무 능력 향상 노력은 개인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안정성, 만족감 등) 향상을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과 생존, 그리고 국가 수준의 고용 안정성 확보 및 총체적 역량 강화에 기여

###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근로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이행 체계 정비
  - 모든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
  - 학습휴가제 실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단계별 이행 체계 구축
- (추진 전략)
  - ① 평생학습휴가제 의무화 법률 추진
    - 유급 평생학습휴가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평생학습휴가의 내용 범위, 시간량, 학습 증빙 등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정비
  - ② 평생학습휴가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평생학습휴가제 시행 의무화 이전에 제도를 안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부처 간, 기업과 노동자 간 관련 내용에 관한 조사 및 소통 강화

### ③ 근로자의 평생학습 기간, 요구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 근로자가 희망하는 평생학습의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기 교육과정을 삶의 전 영역을 고려하여 개발 및 발굴하여 확산

#### • (평생학습휴가제 관련)

- 「평생교육법」개정으로 평생학습휴가제 시행 의무 조항 강화(휴가 기간, 지원 범위,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이행 등)
- 「평생교육법시행령」에 평생학습휴가제 시행에 따른 대체인력정보망 연계, 학습 정보 제공 방법, 교육비 지원 기준, 학습 휴가의 내용 등의 조항 추가
-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TF를 구성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된 학습 휴가와 관련된 내용 조정 및 우선순위 결정
- 기업 및 근로자(사용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휴가제와 관련된 조사를 실행하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 형성
- 평생학습휴가제의 시간량(휴가 기간), 학습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단기 교육 과정 개발·배포, 기 운영 기관 발굴 및 정보망 구축

#### • (범부처 연계 온 국민 평생학습이력체계 구축)

- 전 국민의 평생학습권 실현을 위해 각 부처별 분질적으로 관리하는 각종 평생학습이력을 평생학습계좌제의 재설계·재구조화를 통한 「범부처 연계 온 국민 평생학습이력체계」 구축
- (학습수요·활용가치 기반 메커니즘 구축) 학습자의 학습이력 활용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학습 수요 기반 평가인정 체제 구축

## ■ 기대 효과

### • 평생학습을 통한 산업 변화 대응력 제고 및 국가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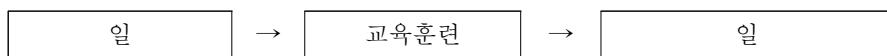
- 일터의 평생학습문화 조성으로 인적자본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가 경쟁력 강화
- 기존의 단순 학습이력 연계를 통한 누적·관리에서 학습이력증명서의 사회적 활용을 위한 평생교육 제도의 공신력 제고

## 참 고 2

## 일-학습순환제 도입

- 일-학습순환제 활성화를 위해 학습휴가제 활성화
  - 평생학습 참여의 걸림돌인 학습시간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
  - 생애전환기 장기간 학습 휴가 사용 보장하여 신규 고용 창출과 연계
  - 일-학습순환제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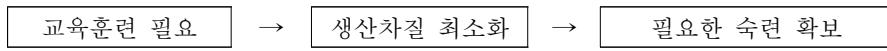
재직자



실업자



기업



※ 독일 지멘스 : 스마트공장 30% 생산성 향상, 감원하지 않고 남는 시간 노동자들의 재교육→직원들의 업무혁신으로 매출 8배의 신장/ 유한킴벌리 : 4교대 ‘평생학습’ 혁신 통한 노동 및 고용관계 발전

※ 덴마크 Job-Rotation 사례 참조

※ 프랑스 : 근속연수 2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위한 휴직권리를 보장하되, 교육기간 동안 교육비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의 80~90%를 지급

## 6 평생학습계좌제 검정고시 과목 면제 전과목 확대

-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검정고시 과목 면제를 국어, 영어, 수학 과목까지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높이고 중장년 학습자가 고등 학력을 취득하여 단계를 높인 취업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취득 제도를 보완

### 필요성

- 기초학력 취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것임
  - 일부 학령기 청소년이 내신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자 검정고시를 이용하고 있으나 본래 검정고시의 취지는 학력 취득 기회를 놓친 학습자에게 주어진 계층 사다리 역할임
- <평생학습계좌제> 제도가 이러한 검정고시 제도에 과목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중장년 학습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어려운 국어, 수학, 영어 과목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중장년 학습자는 취업시장에 필요한 고등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에 대하여 수료가 목적으로 내신 확보가 아님에도 변별력을 높인 검정고시 시험을 치러야 했기에 합격률이 매우 낮음
- 2023년 통계에 의하면 25세~64세 연령 인구의 약 7%가 중졸 이하 학력으로 이 사업의 대상임

※ 2023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1,057명-행정안전부 자료.

###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개정을 통해 학습 계좌제의 학력 인정 범위를 전 과목으로 확대
- (추진 전략)
  - 법령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개정 전 (현재)	개정 후
<p>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b>합격하여</b>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p>	<p>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b>합격하거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습계좌제를 통하여</b>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p>

- **(주요 내용)** 검정고시 과목 면제는 점수를 통한 내신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신을 필요로 하는 학령기 청소년은 진입하지 않음
  - **(기능·역할)** 고등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가 검정고시 제도와 평생 학습계좌제를 통해 기초학력취득을 할 수 있는 학력취득체계 마련
  -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 국민 누구나 어려운 시험을 통하지 않고도 평생학습 계좌제를 통해 기초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취약계층 지원)** 학습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 보장

## ■ 기대 효과

- 생산가능인구 중 기초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국민이 고등교육을 통해 취업시장 단계를 높이는 계층 사다리 역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 확산
- 학습 결과를 기초학력 인정과 연계하여 학습 동기 부여

- 전생애발달의 관점에서 기존의 노인복지와 일자리 중심의 노인교육을 벗어나 노년기 잠재력 개발과 사회참여 그리고 노인의 지식과 자원의 사회적 공헌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인생대학’ 운영

## 필요성

- 노인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한 평생교육
  - UN기준에 따르면, 2018년 고령사회(15%) 진입, 2030년 초고령사회(25.5%, 2040년 34.3%)로 인구의 1/3이 고령자인 진생애사회로 가고 있음
  -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인 대한민국이 고령사회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이 요청됨
-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의 노인교육은 전기 노인을 위한 재취업교육과 후기 노인을 위한 여가 교육 등 교육에 국한되었음
- 일자리와 복지 중심의 노인교육을 벗어나 전생애발달의 관점에 기초한 노년기 잠재력 개발, 주체성 향상, 노인의 지식과 자원을 활용한 생산적 공헌 등 노인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적 관점의 노인 교육이 필요함
- 또한 기존 노인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건강한 노인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교육의 수준 향상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노인 인구의 양적 증가와 노인 학습자의 학습 요구 수준 향상에 부합하여 노인의 학습권을 실현하는 전문적인 노인교육의 장으로서 인생대학 운영
  - 노인의 평생학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사회 사회정책 재편 필요

- 노인의 평생학습을 주제로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장관이 주재하는 ‘평생교육 진흥위원회’ 내실화하여 범 부처 평생교육 유관 정책의 조정과 지원
-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신중년사회 공헌사업과 중장년재취업과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박물관, 미술관, 체육 시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노인친화적 재구조화

- (추진 전략)

- ① 인생대학 운영을 위한 공적 지원

- 기존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생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인생대학에 공간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전국적인 인생대학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인생대학 모형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센터가 필요함

※ 우리나라 전문대의 98%, 4년제 대학의 73%가 사립대학이고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대학의 인생대학 참여가 가능

- ② 인생대학의 운영에 학습자 참여 활성화

- 인생대학의 기획과 운영에 학습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와 세대간 학습에도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회공헌형 세대간 학습 프로그램의 모델로 퇴직 교원의 돌봄교실 돌봄 활동, 퇴직 세무 공무원의 청소년·청년 세무 교실, 퇴직 경찰의 지역 안전 교육 등이 있음

- ③ 지역의 여건에 맞는 모형의 선택과 조합

- 다양한 인생대학 모형을 개발하여, 지역 상황에 따라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습동아리 모형과 대학과 연계된 모형을 선택하여 운영
- 지자체의 평생교육시설과 연계된 모형의 경우 거점형(평생학습관)과 지점형 (읍면동평생학습센터)를 조합하여 운영

## ■ 기대 효과

- 인생대학을 통하여 노인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생애에 걸친 학습권의 실질적 구현

**① ‘위례인생학교’ 모형**

- 위례인생학교는 2020년에 개교한 회원제 학습동아리로서, 강사가 학생이 되고 학생이 다시 강사가 되는 수평적 시스템으로 운영함. 외부 보조금 없이 회원의 회비와 자원봉사로 운영함

**② 서울시 ‘대학연계 시민대학’ 모형**

- 서울시 대학연계 시민대학은 2013년부터 서울시내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대학의 강의실과 교수진을 활용하여 인문학적 성찰, 시민민주주의 등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강좌를 운영하였음

**③ 대만의 ‘낙령학습센터’ 모형**

- 대만의 낙령학습센터는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낙령정책에 따라 2008년부터 설립된 대표적인 노인교육기관으로 초중등학교, 노인문화교육센터, 도서관 등에 설치하여 운영함.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낙령학습 교재 시리즈를 개발하고 ‘낙령 학습계획사’를 양성하여 각 센터에 배치함

**④ 일본 럿교대 ‘세컨드 스테이지 칼리지(RSSC)’ 모형**

- RSSC는 은퇴 후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좌, 세미나, 논문 작성 등을 포함하는 1년간 18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임. 소규모(100명) 집중 과정으로 2008년부터 운영 중

**⑤ 프랑스의 ‘U3A(제3기 인생 대학)’ 모형**

- 프랑스의 U3A는 1973년에 개교하여 프랑스 전역의 국립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은퇴자들이 대학의 공개강의, 정규강의, 워크숍에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됨. 프로그램의 내용은 인문학이나 예술 분야가 많음

**⑥ 미국의 ‘엘더호스텔’ 모형**

- 엘더호스텔은 은퇴자를 대상으로 여행과 학습을 결합한 숙박형 단기간(주로 1주일) 프로그램임. 대표적인 방식은 대학과 연계하여 방학 중 유휴공간인 기숙사를 숙소로, 강의실을 수업장소로, 은퇴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지역 탐방 등으로 운영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전문 자격 〈평생교육사〉 제도가 현재 많은 지자체와 기관에 배치되고 있지만, 그 법정 배치 기준이 평생교육 영역 확대의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국민의 보편적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
- 전 국민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과 전문적 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 기관 및 기준 확대가 시급함

## ■ 필요성

- 모든 국민이 지역과 환경에 관계없이 양질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필요
- 현행 법·제도의 미비로 지역 간 평생교육 격차 상존 및 인력 배치 불균형
-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교육의 불균형 해소 및 인력 윤용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필요

## ■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국민 학습권 실질 보장 및 사회적 불평등 완화
  - 생활밀착형 학습지원을 위해 현장에 배치되는 평생교육사 배치 기관 확대 및 기준 강화
  - 교육 소외계층(고령자, 장애인,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등)의 학습 기회 확장
- (추진 전략)
  - ①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기관 확대
    - 현재 일부 시·군·구, 평생학습기관에만 제한적으로 배치되는 평생교육사를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 및 공공 학습시설에 의무 배치
    - 교육청 및 늘봄학교(교육부) 등 학교와 연계한 시설 등에 평생교육사 배치

## ②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기준 확대

- 지역의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보완으로 지역별 인력 운영의 실효성 확보
-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상향 설정으로 주민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 (주요 내용)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평생교육사 배치기관 및 기준 확대·강화
  - 「평생교육법」개정으로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 조항 강화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 기준) 관련 〈별표 2〉 개정을 통한 법적 배치 기준 확대 및 행정적 의무화

## ■ 기대 효과

- 정부 핵심 정책의 실천력 제고에 기여
  -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확대로 지역 밀착형 학습복지 촉진
  - 국정과제와 현장 정책 간 연결고리(connector)역할 수행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통합을 위한 첨병 역할 극대화

## 참 고 4

##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확대 및 강화 로드맵

○ 1단계 : 평생교육사 전담 공무원 신설을 통해 배치 제도의 실효화, 입법·예산 기반 재정비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현행 배치 현황 전수 조사
- 실제 배치율, 직무수행 실태, 예산 편성 실태 점검
- 배치 확대 및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평생교육 공무원 직렬화)
- 평생교육사 전담 공무원 신설

법령명	신설안
평생 교육법	<p>제26조의2(평생교육 전담공무원)① 평생교육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이하 “평생교육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p> <p>② 평생교육전담공무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평생교육전담공무원은 그 관할 지역의 평생교육 수요와 실태를 파악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학습자 상담을 실시한다.</p> <p>④ 관계 행정기관과 평생교육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평생교육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국가는 평생교육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교육부 중심의 부처 간 협력 추진〉

-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교육부
- 공무원 직렬 신설 관련 법률 개정 의뢰 : 교육부 → 각 부처
  -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 : 인사혁신처
  -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전문경력관 규정/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교육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 : 교육부 교육정책과 및 고등교육정책과 등

○ 2단계 : 법정 배치기관 확대 및 기준 강화

- 기관별 규모 및 성격에 따른 배치 기준 상향 조정

〈평생교육법 개정안〉

현행	신설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평생교육시설에는

현행	신설
<p>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p> <p>③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규모, 학습 대상자 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p> <p>④ 민간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사 배치를 권장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야 한다.</p> <p>⑥ ③항~</p> <p>⑦ ④항~</p>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2] 개정안

배치대상	배치기준(현행)	배치기준(안)
1. 진흥원, 시·도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li> </ul>	직원의 50%이상 평생교육사 배치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교육사 1명 이상</li> </ul>	평생교육사 1급 포함 1명 이상 배치
3. 시·군·구평생학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직원 2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li> </ul> </li> <li>정규직원 20명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li> </ul> </li> </ul>	인구 10만명당 1명 기준으로 평생교육사 배치 (소외지역(농산어촌, 저밀도 지역)은 별도 추가 배치)
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교육사 1명 이상</li> </ul>	평생교육사 2급 포함 1명 이상 배치
5.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시설	신설	평생교육사 2급 포함 1명 이상 배치

\* 출처: 강대중 외(2017)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발전 방안 연구. 수정 제안

### ○ 3단계 : 전국 확대 및 법정 정착화

- 배치 인력의 정원 반영 및 공공 고용구조 내 실현
- 평생교육사 배치기관 대상 학습 참여율, 만족도 등 성과 지표 도입

**정책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 상임 대표 단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02-586-1976 / kfle@hanmail.net)
- 한국평생교육사협회 (02-499-0043 / kale\_2002@hanmail.net)
- 한국평생교육학회 (010-3108-7001 / kssle2012@gmail.com)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02-736-9983 / kallc2020@naver.com)
- 전국지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041-635-1201 / jjh0607@clehrd.or.kr)